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13일, 김용민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1. 20.)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2. 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1월 11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찬반토론의 요지

(곽규택의원)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사건을 3심재판에서 파기환송하면 법왜곡죄
에 해당하게 됨.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게 됨.

(박은정의원)

2023년 독일에서도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에 따라 특정 집

단에 유리한 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왜곡죄 유죄를 인정함. 우리도 법적 용을 잘못된 판사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필요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